

[별표 7] <신설 2006.6.30>

위탁수수료(제24조의2 관련)

1.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

위탁금액	요율(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)	비 고
10억원 이하	20/1,000 이내	1. "위탁금액"이라 함은 토지매입비,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,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(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)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. 2.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가산한다. 3. 기초조사,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. 4.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.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7/1,000 이내	
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3/1,000 이내	
50억원 초과	10/1,000 이내	

2. 도로공사업무

도로공사비	요율(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)	비 고
100억원 이하	90/1,000 이내	1. "도로공사비"라 함은 재료비·노무비·일반관리비·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2. 도로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설계·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3. 설계변경으로 도로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. 4.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도로공사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로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. 5.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. 6. 조사·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.
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	80/1,000 이내	
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75/1,000 이내	
500억원 초과	70/1,000 이내	